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신구 대비표 (p.20)

현 행	개 정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현행과 같음)
<시·군·구>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현행과 같음)
※ (생 략)	(현행과 같음)
* 자체재원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와 상급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조정교부금(보통, 특별)이 포함, 재원부담 주체가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지방비(자체재원)로 대체, 지자체에서 자체 조성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융자(내부거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금은 지방채로 봄(이하 공통)	* ----------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조정교부금(보통, 특별), 지방소멸대응기금(다만, 시·도에서 시·군·구로 교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포함, ----------